

# I. 검토배경

---

- 외환위기시 IMF의 권고로 1999년도에 도입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EU방식을 우리나라의 환경<sup>1)</sup>에 반영한 것으로
  - 지급여력비율을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감독상 조치수단으로 활용함
  - 동 제도를 통하여 1999년 이후 15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가 계약이전 및 M&A를 통하여 구조조정 되는 등 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재편을 촉진함
  - 또한 보험회사 역시 동제도의 도입이후 프라이싱(Pricing) 및 판매목표 수립시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리스크를 감안한 경영전략수립에 기여함
  
- 그러나, 동제도의 경우 부실한 회사의 퇴출기준으로만 인식되는 점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일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
  - EU의 경우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"Solvency-II"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,
  -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음
  
-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지급여력제도의 모델이 된 EU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추세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 변화 방향의 추정 및 보험산업에 의미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

---

1) EU의 지급여력제도중 금리리스크(책임준비금의 4%)는 수정없이 도입한 반면에 보험리스크는 생·손보 모두 보험회사의 경험실적(보험금지급을 혹은 손해율)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